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체계	3
2. 총괄적 검토	5
가. 개요	5
3.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목적과 정의	8
나. 국민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다.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13
라.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7
마.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18
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20
사. 영유아, 학교미디어교육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21
아.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23
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26
차.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27
카. 위원회 운영 등 업무의 위탁, 경비 지원 및 보조, 국제협력 ...	28
타. 부칙	30

※ 참고자료

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31
2.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32
3. 타 부처 의견	3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잡지·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제11조).
-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8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법」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중앙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비판적 사고와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문화적 역량 제고, 미디어 과몰입 예방 및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서, 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11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2조(정의)	제12조(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제3조(국민의 권리)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제4조(국가의 책무)	제14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5조(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제17조(위탁)
제8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8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9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19조(국제협력)
제10조(의견 청취)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총괄적 검토

가. 개요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유통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 부처 미디어 교육 현황 >

구분	중점 분야	사업 내용
문체부	뉴스, 영화, 방송,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및 콘텐츠의 진흥 및 교육 주관	- (프로그램) ▲뉴스 : 초·중·고 강사 파견, 대학강좌 개설, 홍보 캠페인 등 ▲방송·게임·영화·웹툰 등 : 이용자 교육 및 체험 등 - (인프라)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미디어교육원(1개소) 등
방미통위	장비와 시설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 중심 교육 특화	- (프로그램) 유·초·중·고교, 대학, 사회시설, 방송사 등의 지원 등 - (인프라)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소) 등
교육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미디어교육 추진	- (프로그램) 교사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학생 디지털 미디어 캠프 등 - (인프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3개소) 등
과기부	디지털 기기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과의존 예방	- (프로그램·인프라)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디지털 역량, 과의존 예방 등)

- 국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기반 뉴스소비에서 선택적노출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절요인으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¹⁾되고 있는바 정보과잉 및 알고리즘 기반 추천, 허위정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재상황에서 정보의 이해와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1) 소셜 미디어 뉴스 이용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승문 성옥준, 2025.2.6

- 국내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 학력, 소득, 지역 등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은 경향이 나타남.
- 해당 격차는 정보활용능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역량증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뉴스와 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한편, 분별 있는 미디어 이용과 저작권 이해 등의 통합적 미디어 문화 역량의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정안은 미디어의 정의를 레거시미디어 위주로 각 목에 그 밖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적용 범위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으며, 디지털미디어(방송·정보통신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부처소관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각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 현행 타 법률 체계 정합성에 합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방미통위

주관으로 문체부·과기부·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교육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립 및 발표하고 있음

- 아울러 제정안과 유사한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되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디어역량 증진 등 지원 및 관련 조직 운영 등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법안 제정 실익이 적으며, 동법이 읽기 문화 진흥 등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제35조제1항제8호)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와 미디어교육 인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점을 고려, 별도 위원회 설치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과 정의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미디어’ 및 미디어문화역량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의 정책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과 사람 또는 기계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자.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문화역량”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창의적·윤리적 소통,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능력을 말한다.
3.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미디어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미디어교육사”란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실행·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6.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이란 미디어교육사를 포함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공공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학교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정책 수립 및 평가·국제교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협력기관”이란 소관 분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제정안이 국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책방향과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함.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바,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 의	주무부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정안은 현행 법률체계에서 규정되지 않은 미디어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동 제정안이 규정하는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동의할 수 있어 보임.

- 아울러 미디어교육과 별개로 미디어문화역량을 정의함으로써 미디어문화역량이 미디어교육의 범주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규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계됨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의 관련 용어는 레거시 미디어 위주로 정의되어 있고,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문화역량과 미디어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미디어 및 미디어 문화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능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국민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정안 요지

- 국민의 권리(안 제3조)
- 국가의 책무(안 제4조)
- 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안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2) 제정안 조문

제3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인종, 지역,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제공되어 기관 주도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임을 상기해 다양한 배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이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안 제4조는 국가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소외계층이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이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다.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 범위와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2) 제정안 조문

제7조(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평가 지침 마련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조정 ·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교사, 미디어교육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⑧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7조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심의 및 조정의 범위와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제도에서 개별 부처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계획 및 정책방향에 대해 심의·의결하려는 것으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관한 정책은 다수 부처들의 정책들과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위원회 유형의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 정립을 통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과 통신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디어 활용과 진흥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소관에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위원회 설치를 통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으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하에 설치근거를 두고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안 제8조의 ‘정책협의체’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 따라 필요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거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의 하부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2) 제정안 조문

제8조(정책협의체의 구성 ·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 시행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미디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8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 시행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채널로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뿐만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등 전문가, 사업자 등의 현장 이해관계자를 통한 정책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정책협의체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정책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관 시행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통 채널 운용을 통해 현장 요구 반영과 함께 적극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책협의체’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 따라 필요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거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의 하부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2) 제정안 조문

제9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
3.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도 제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문화 다양성 확산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9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과 비교할 때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의 일관된 방향 제시 및 시행기관의 추진 계획 점검을 통한 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안 제11조)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지침 규정(안 제11조)

2) 제정안 조문

제11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 및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한 문체부장관의 성과평가 지침 마련과 시행기관장의 소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성과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평가단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 간 협력, 시행기관 사업의 구체적 성과 등을 점검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이 정책 목적과 사업 목표에 비추어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 영유아, 학교미디어교육 및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의 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안 제12조)
- 국가의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안 제13조)

2) 제정안 조문

제12조(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등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미디어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학교의 미디어 관련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미디어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정규 교과과정 및 교육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등은 국민들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을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각각 영유아·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계층 간 정보 불균형 및 미디어문화역량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과 교육부 협의를 통한 미디어교육의 교과 과정 반영 등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사회미디어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과 시행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기대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교육 전문인력과 관련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2) 제정안 조문

제14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문화역량 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

로서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미디어교육사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재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4조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현재 언론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각 미디어교육사 1급·2급(언론재단)과 미디어교육지도사(시청자미디어재단)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시간의 강의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미디어강사로 지정·관리하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자격 취득 요건과 미디어강사 관리 방식이 달라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강사의 강의 역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미디어교육 자격제도 관리 및 제도 운영 관련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하려는 것임.
- 다만 제3항 자격조건 중 제1호 미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교육 전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안 제15조)

2) 제정안 조문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5조는 국가 등이 공공기관, 대학, 학교 등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을 폭넓게 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포괄적인 미디어교육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보임.

차.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업무 수행 중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2) 제정안 조문

제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5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업무 추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과 협력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정책 공백의 최소화 와 업무 성과 극대화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카. 위원회 운영 등 업무의 위탁, 경비 지원 및 보조, 국제협력

1) 제정안 요지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업무 효율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위원회 운영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 재원 규정(안 제18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항 규정(안 제19조)

2) 제정안 조문

제17조(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19조(국제협력) ①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국제평가
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검토사항

- 안 제17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8조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의 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안 제19조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 중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타. 부칙

1) 제정안 요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정안 조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시행령 정비, 전담기관 지정 등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미디어교육 지원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8,713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사업 추진(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62개교→948개교 등, 사회 미디어교육 운영시설 확대 19처→25처) ○미디어교육사 시험 확대(2급→1급 추가 시행) ○국내 유일 미디어교육 분야 인가 종합교육 연수원 운영 및 교원 직무 연수 및 커리큘럼 개발('22년 64개 과정 1,486명 교육 → '23년 93개과정 1,630명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추진 - 뉴스읽기뉴스일기, 체크톤(팩트체크 경진) 등
'24년	8,63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사업 추진(미디어교육 운영학교 948개교→1,170개교 등)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시범 추진('24.2학기) ○교원 직무연수 및 커리큘럼 개발('23년 93개 과정 1,630명 교육 → '24년 96개과정 1,919명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미리3일' 추진 - 방탈출 게임 등 현장 행사 등 진행 - 인플루언서 활용 캠페인 송 제작 등
'25년	10,345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사업 추진(미디어교육 운영학교 1,170개교→1,300개교(목표) 등) ○부모와 함께하는 미디어교육, '로니와 함께하는 미디어 탐험대' 시범 실시 ○연극을 활용한 체험형 미디어교육 개발 및 시범 교육 진행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미리워크' 추진 - (서울 및 세종 일원) 팩트체크 관련 현장 행사 및 '뉴스읽기뉴스일기전사회' 등 진행 - 미디어교육 관련 세미나 및 시상식 진행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담당 조직 보강·개편 - (기존) 미디어교육팀(1팀) → 미디어 교육지원팀, 미디어교육기반팀(2팀)

참고 2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표 1] 제정안 관련 예산 현황

	제정안	예산현황	비고
1	국가의 책무(안 제4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정책 시행 ·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2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안 제7조)	-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비 등(320백만원)	신규
3	정책협의체 운영(안 제8조)	- 협력기관, 시행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협의체 운영 · 협의체 운영비 등(24백만원)	신규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0백만원)	신규
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평가지침 마련 및 평가 시행 · 평가지침 마련 및 평가 용역(10백만원)	신규
6	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안 제12조)	- 영유아 및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여부 및 규모 확인 어려움	실시 중
7	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안 제13조)	- 사회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여부 및 규모 확인 어려움	실시 중
8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여부 및 규모 확인 어려움	실시 중
9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전문기관 등 지원 사업 추진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여부 및 규모 확인 어려움	실시 중
10	경비지원 및 보조(안 제18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정책 시행 보조 ·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11	국제협력(안 제19조)	- 미디어교육 국제협력 사업 추진 · 현 시점에서는 국제협력 사업 규모 확인 어려움	신규

[표 2] 예산 산출내역

예산 내역	산출 근거	비고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320백만원)	-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320백만원) · 위원회 사례비 90백만원(15인x30만원x2회)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6백만원(2인x88백만원) * 언론재단 평균 연봉(알리오 고시 참고) ·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54백만원	신규
정책협의체 운영 (24백만원)	- 오프라인 정책협의체 운영(24백만원) · 협의체 운영비 24백만원(20인x30만원x4회)	신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6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연구(60백만원)	신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10백만원)	- 성과평가 지침 마련 연구 및 평가(10백만원)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을 수행해야하는 등 현 시점에서 사업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내역 제외

참고 3

타 부처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미통위 (‘25.10.1.)	<법안 제정 수용 곤란> - 제정안은 미디어의 정의를 레거시미디어 위주로 각 목에 그 밖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적용 범위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함 - 디지털미디어(방송·정보통신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방미통위가 미디어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각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 현행 타 법률 체계* 정합성에 합치 * 경제교육지원법(기재부), 안전교육기본법(행안부), 법교육지원법(법무부) 등 -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방미통위 주관으로 문체부·과기부·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미디어 교육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립** 및 발표하고 있음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8월) 및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4.3월) 발표 - 본 법안과 유사한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 발의)」이 이미 발의되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행안부 (‘25.10.1.)	<제7조 수정 및 제8조 삭제> - 법률안 제7조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으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하에 설치근거를 두고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법률안 제8조의 ‘정책협의체’는 미디어문화역량증진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체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 따라 필요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거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의 하부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
기재부 (‘25.10.2.)	<법안 제정 수용 곤란> - 현행 법률(신문법)을 통해 미디어역량 증진 등 지원 및 관련 조직 운영 등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법안 제정 실익 부재 - 현행 법률은 읽기 문화 진흥 등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제35조제1항제8호)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와 미디어교육 인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점을 고려, 별도 위원회 설치 불필요